

행정안전부령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8호, 2023. 05. 16. 공포, 2023. 11. 17. 시행) 개정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 법률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데이터 제공 거부 조정 절차 및 서식 정비(안 제3조, 별지 서식 제5호, 제6호)

제3조의 데이터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 조정위원회의 소관으로 하고 이에 따라 별지 서식 제5호, 제6호를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6.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5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로, “위원회에”를 “분쟁조정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를 “분쟁조정위원회는”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데이터 제공 거부 조정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요청 내용	요청기관	기관명			
		담당자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요청일	년	월	일
	요청 명세 * 데이터 제공 요청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명칭			
		데이터 항목			
이용 목적					
제공 거부 통보 내역	제공 거부 통보기관	기관명			
		담당자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거부 통보일	년	월	일
	제공 거부 사유 * 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 통보 공문을 첨부합니다.				
조정 요청 사유	* 별도의 용지에 적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공공기관의 장

직인

조정 결과 통보서

접수문서번호		접수일		
		년	월	일
요청기관	기관명			
	주소			
요청을 받은 기관	기관명			
	주소			
요청 취지				
주문				
이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u>법 제5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 에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거부 조정 요청서를 <u>위원회</u> 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① ----- ----- ----- ----- ----- 「 <u>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u> 」 제29조에 따른 <u>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u> ----- ----- ----- <u>분쟁조정위원회</u> 에 -----.
② <u>행정안전부장관</u> 은 위원회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조정 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 결과 통보서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u>분쟁조정위원회</u> 는 ----- ----- ----- ----- ----- ----- -----.